

# 2024년 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## 1 사업개요

- **사업목적:**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판매 촉진 효과 도모를 위한 수출지원, 시제품 제작, 상품화·홍보 등 수요기업 맞춤형 예산 및 컨설팅 지원
- **지원규모:** 총 33개사\* 내외, 총 9.9억원(기업당 사업화 자금 3천만원)
  - \* 수출기업 집중지원 3개사 이상 선발, 「예비 오션스타」 선정 기업 우선 배정(5개사 내) 대·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기업 지원 우선 배정(5개사 내, 별도 공고 예정)
  - \*\* 정부지원금의 10% 이상 현금 부담 면제 유지
- **지원내용: 사업화 자금 및 사업화 컨설팅 지원**
  - **사업화 자금지원:** 시제품 제작, 연구개발, 제품 검증, 제품·서비스 및 기업 홍보, 수출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

### <일반>

구분	지원내용	비고
시제품 제작	◦ 재료비, 장비구매 및 시설대여, 위탁 제작 등	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 *선정 후 안내
연구개발	◦ 시장조사, 기술개발 등	
제품 검증	◦ 시험·분석, 상표·특허 획득, 인증 등	
기업 홍보	◦ 카탈로그, 동영상, 홈페이지 제작 등	
박람회 참가	◦ 국내 전시회 참가비, 부스 임차비	

### <수출>

구분	지원내용	비고
해외홍보	◦ 해외 전시회 참가비, 부스 임차비 등(여비 불가)	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 *선정 후 안내
바이어 발굴	◦ 바이어 매칭, 관련 컨설팅 등	
수출사업화 지원	◦ 관세, 물류지원, 포장지원	

- **사업화 컨설팅 지원:** 국·내외 홍보·마케팅 또는 판로개척 컨설팅 제공

구분	컨설팅 지원 항목	
	국내 사업화 컨설팅 지원항목	해외 사업화 컨설팅 지원항목
홍보·마케팅 컨설팅	① 브랜드/홍보/마케팅 전략 수립 ② 온라인/오프라인 마케팅 컨설팅 ③ 디자인·브랜드(BI/CI 등) 개발 컨설팅 ④ 기타	① 브랜드/홍보/마케팅 전략 수립(글로벌/국가별) ② 지적재산권(국제상표, 특허 등) 출원 지원 ③ 해외 온/오프라인 마케팅 컨설팅 ④ 수출 관련 컨설팅(수출검사, 서류대행 등) ⑤ 수출용 포장패키지 기획 컨설팅 ⑥ 기타
판로개척 컨설팅	① 시장조사 및 분석 ② 공공판로 ③ 유통채널 ④ B2C, B2B 판매전략 ⑤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(MOU체결 등) ⑥ 국내박람회·전시 관련 컨설팅 ⑦ 기타	① 해외 POC(시장조사분석, 글로벌마켓 테스트 등) ② 권역별 해외 바이어 발굴 ③ 해외수출유통채널(글로벌 플랫폼 입점 등) ④ 해외 인·허가/인증(ESG, 비건 인증 등) ⑤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(MOU체결 등) ⑥ 해외박람회·전시 관련 컨설팅 ⑦ 기타

※ 컨설팅 지원 항목은 기업별로 상이하며, 진단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## □ 성과목표: 업력별 성과 목표 제시 필요

- 초기기업: 시제품 제작, 인증 등 사업비 지원 항목에 따른 목표 제시
  - \* 필요 시 매출액 및 고용창출 목표 제시
- 성장기업: 매출액 및 고용창출 목표를 필수로 제시하여야 하며, 사업비 지원 항목에 따른 목표는 선택적 제시
- 수출기업: 5천만원 이상 수출액 목표 제시

## 2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

### □ 신청자격

- 해양수산 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
  - \* 접수 마감일 기준,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(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,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설립연월일 기준)
  - \*\* 업력 기준으로 초기기업(3년 미만) 및 성장기업(3년 이상~7년이하)으로 구분
  - \*\*\* 예비오션스타의 경우 업력제한 없음
  - \*\*\*\* 수출기업은 창업 성장기업으로 직전년도 수출액 3천만원 이상 기업 대상

- 접수 마감일 기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'사업을 개시한 날'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
  - \* 개인사업자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
  - \* 법인사업자: 법인등기부등본 상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
- [첨부1]의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결정
- 공동대표 구성된 경우,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
### □ 제외 대상

-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 중인 경우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 - \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/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
- 창업 성장기업의 경우,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
- 신청기업, 대표이사 또는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동 사업의 지원 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\*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
\* 지원 제외 대상 업종 [첨부2] 참고

### 3

## 신청방법

□ **신청기간:** 2024. 5. 29.(수)~6. 11.(화) 17:00까지

□ **신청방법:**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([www.kimst.re.kr/startup](http://www.kimst.re.kr/startup)) 공고·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류 전산 접수

\* 접수마감일 17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어 접속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 입력이 불가하므로 접수마감일 17시 이전에 신청 서류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함

\*\* 접수마감일에는 접속자 증가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권고

□ **신청서류**

연번	신청 서류	비고
①	지원신청서(별첨 참고) (직인 날인 필수)	필수 제출
②	사업자등록증(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)	필수 제출
③	최근년도('22~'23년) 결산 재무제표(성장기업, 수출기업에 한함) *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우선 제출 후 23년 재무제표 제출	필수 제출
④	직전년도('23년) 수출실적증명서(한국무역통계진흥원)	수출기업 필수 제출
⑤	신청기술 관련 지식재산권, 인증 서류 등	해당 시 제출

※ 제출자료는 신청기업 선발 기준이 되는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

※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전담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허위 발각될 시, 사업 선정 취소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(제출한 자료는 일괄 반납되지 않음)

※ 한국기업데이터를 통해 기업 신용정보를 조회하며, 조회가 안 되는 기업의 경우 필요 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제출을 추가 요청할 수 있음

## □ 선정절차

- 사전검토, 서면평가, 발표평가 및 운영위원회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 (해양수산 신산업 5개 분야 중점 선발)
  - \*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에 따른 해양수산 신산업(기술): ①친환경·첨단선박, ②스마트 블루 푸드, ③해양레저관광, ④해양바이오, ⑤해양에너지·자원
- (사전검토) 신청서류 검토를 통한 단계별 자격요건 확인
  - \* ①접수 후 신청서류 여부확인 ②서류평가 후 세부자격요건, 제외대상 검토
  - \*\* ①신청서류 미제출, ②자격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탈락조치하며, 후순위 기업 선정함(기타 특이사항은 발표평가 시 평가위원회에 제공)
- (서류평가)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한 발표평가 대상기업(1.5배수) 선정
  - \* 지원 대상기업의 2배수 미만 접수 시 서류평가는 생략할 수 있음
- (발표평가)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기업별 점수 산정

### <서류/발표평가 운영>

- 평가위원회 위원은 5인 내외 외부 전문가로 구성
- 평가 점수 상위순위에 의해 선정하되 동점 발생 시 업력이 낮은 기업 우선 선정 (단, 60점 미만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)
- 평가항목 및 배점

평가항목	세부항목	배점
기업 역량 및 추진의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경영역량(재무상태, 조직구성, 전문성 등)</li> <li>■ 국내외 동향파악 수준, 사전 기획을 위한 노력 등</li> <li>* (수출기업의 경우) 글로벌 관계자 대상으로 소통, 홍보 등 진행 가능한 자료 등의 준비 완성도</li> </ul>	20
사업화 대상기술의 우수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화 대상기술 및 제품의 권리성 및 파급성</li> <li>■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및 독창성</li> </ul>	30
시장성 및 사업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목표시장 규모, 성장가능성 및 시장점유현황</li> <li>■ 추진목표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</li> <li>* (수출기업의 경우) 수출국가, 전시회/전시시장의 특성과 아이템과의 적합도</li> </ul>	40
사업비 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</li> </ul>	10

※ 대·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기업 지원의 경우,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

- (운영위원회) 발표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사업 준비단계, 사업 실행 단계 분야별 수혜기업 선정

\* 운영위원회: 부처사업담당관 1명과 관련 전문가 4명 이상 포함 구성

- (오리엔테이션/현장진단) 선정기업 대상으로 기업진단 등을 통해 필요 컨설팅 내용 확정 및 컨설턴트 매칭(필요 시 현장방문)

- (가점사항) 가점항목에 따라 발표평가(최종 선정평가)에서 가점 부여

가점 규모	가점 항목	입력기준
5점	◦ 「예비 오션스타」 선정('21~'23)	합산하여 최대 10점 이내 부여
3점	◦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입상('21~'23) * 수상 다음해부터 3년 간 최초 1회 한정(선발 시 가점 적용)	
1점 최대 2점	◦ '23년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지원 우수성과 ◦ '22년 사업화 R&D 지원사업 우수 기업 * 최종평가 평균점수 80점 이상, 주관기관 ◦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	

## □ 사업 추진절차

구분	시행주체	세부내용
기업선정 (6월)	전담기관/ 수행기관 (평가위원회)	• 접수 사전검토, 서류평가, 발표평가, 운영위원회를 통한 수혜기업 선정
↓		
결과통보 및 협약 (7월 초)	전담기관 수혜기업	• 기업선정 결과 통보 • 협약 체결 및 선정간담회 개최 * 사업 수행기간: 6개월
↓		
중간모니터링 (8~10월)	전담기관/ 수행기관	• 진행사항 파악 및 기업 애로사항 청취 - 필요 시 외부 전문가 참석
↓		
결과보고서 제출 (11월~12월)	수혜기업	• 결과보고서 및 성과자료(증빙포함) 제출
↓		
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(12월)	전담기관/ 수행기관 (평가위원회)	•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및 우수기업 선정 •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

※ 일정 및 세부내용은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 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동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취소, 제재조치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전담기관은 지원기업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이외 사업비 집행 시 환수조치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정부지원금은 협약 체결 후 전액 선지급
  - ※ 사업비는 사업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집행 완료한 건에 대해 증빙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(<https://www.kimst.re.kr/startup>)에 등록
- 해당 프로그램은 일반(국내 사업화)/수출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, 사업 신청서 접수 시, 택 1(변경 불가)
- 일반/수출 분야별 해당 지원 항목에 한하여 자금 집행 가능

### □ 선정자의 의무사항

-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-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- 전담기관(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) 및 수행기관(한국생산성본부)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(사전진단, 컨설팅 등)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
-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사업종료년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## □ 사업내용 및 신청 등 문의

구분	소속	담당자	연락처	이메일
수행 기관	한국생산성본부 블루스타트업 운영사무국	김재화 연구원	02-724-1116 02-3702-0775	blue@kpc.or.kr
전담 기관	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창업투자팀	이지현 선임연구원	02-3460-0372	jihyeon@kimst.re.kr

# 참고 1

## 창업 인정 기준

신청기업 구분	상세 구분		창업여부	
개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동종 사업 개시	창업아님	
		이종	창업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창업아님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업
	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부도/파산 - 2년 초과			창업	
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			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창업		
법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자회사 여부	법인 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%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	창업아님	
	조직변경	동종업종 유지	창업아님	
		이종업종 변경	창업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-	창업
		동종창업	동일인인 경우 발행주식 30%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업아님 창업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 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업 창업
	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창업	

\* 업종은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를 기준으로 하며, 세세분류(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업종" (통계청 통계분류포털(kssc.kostat.go.kr) 참조)

**참고 2****지원제외 대상 업종**

※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

구분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유희주점업	65211
2	무도유희주점업	56212
3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
4	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 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\*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[kssc.kostat.go.kr](http://kssc.kostat.go.kr))를 기준으로 함